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9.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8.25.

다. 상정일자 :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9.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김 종 웅

가. 제안이유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2015.1.1)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 예산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다량배출사업장 중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 제외 단서 신설 (안 제2조)
- 2)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는 조문 신설 (안 제5조)
-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1단계 : 2015년, 2단계 : 2017년)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 적극 추진
- 4)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 처리시 수수료 종량제 규정 삭제 (안 제16조)
- 5)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별지서식 삭제
 -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2011.4.6)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시행령 적용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 3을 삭제하였음.

○ 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일반 가정용은 2016년까지 현행 대비 종량제봉투별 평균 75%, 2017년부터는 평균 147.9% 인상하였고, 사업장용은 2016년까지 평균 100%, 2017년부터는 평균 180% 각각 인상하였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kg당 현행 대비 2016년까지 11.1%, 2017년부터는 44.4% 인상하였음.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상향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2017년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판매 수입은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충당
되고 있으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2014년 27억3,100만원)은 구 예산을 집행
하고 있음.

2014년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민부담률은 31%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7년까지 78%(환경부 권고 80%)로 높여나갈 계획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과 관련,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